

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

국 가 개 요

1. 국명 : 슬로바키아 공화국(Slovak Republic)
2. 수도 : 브라티슬라바(Bratislava, 42.9만명)
3. 인구·면적 : 546만명(2021), 49,035km²(한반도의 약 1/4)
4. 공용어 : 슬로바키아어
5. 1인당 GDP : 19,546불(2018년)
6. 독립일 : 1993. 1. 1.(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)
7. 정부형태 및 의회 : 의원내각제, 단원제

1. 명칭 : 헌법재판소

-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Slovak Republic

2. 연혁

- 1992. 9. 1. 헌법 제정(1993. 1. 1. 발효)
- 1993. 1. 1.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해체로 독립
- 1993. 2. 15. 헌법재판소 설립
- 1998~2017 13번의 헌법 개정
- 2019. 4. 18. 현행 헌법 개정(2019. 7. 1. 발효)

3. 구성

-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장(President)과 부소장(Vice-President) 1인을 포함한 13인의 재판관(Judge)으로 구성
- 재판관은 국회가 2배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
- 재판관의 임기는 12년으로 중임불가
-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은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

- 재판관 자격 :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법률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, 40세 이상의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있는 슬로바키아 국민
- 재판관은 국회의원 겸임 혹은 행정부 소속 금지
- 재판관 직의 사임 혹은 해임시, 대통령은 국회가 제안한 2명의 후보 중에서 새로운 임기의 헌법재판관 임명

4. 권한

- 법률, 명령,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적 규범통제(헌법 제125조)
 - ① 법률(laws)의 헌법(Constitution), 헌법적 법률(constitutional laws)¹⁾ 및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·공포된 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
 - ② 정부, 장관 및 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의 헌법, 헌법적 법률 및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·공포된 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자치법규의 헌법, 헌법적 법률 및 국회 동의를 얻어 비준·공포된 조약에의 합치 여부 심판
 - ④ 지방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과 국가위임사무의 집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법규명령의 헌법, 헌법적 법률, 공포된 조약, 법률 및 정부·장관·기타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명령에의 합치 여부 심판
- 조약에 대한 사전적 규범통제(헌법 제125a조)
 - 국회 동의를 필요한 조약안의 헌법과 헌법적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
 - 대통령 또는 정부가 조약안의 국회제출 전 심판청구 가능
- 국민청원 또는 국회결의에 의한 국민투표안의 공고 전 투표 안건의 헌법과 헌법적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(헌법 제125b조)
 - 대통령이 국민투표안 공고 전에 심판청구 가능
- 분쟁의 소지가 있는 헌법과 헌법적 법률의 해석(헌법 제128조)
-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. 단, 법률에 의하여 타 국가기관에게 권한쟁의심판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(헌법 제126조)
- 헌법소원심판(헌법 제127조, 제127a조)
 - ① 기본권 및 슬로바키아 정부가 비준·공포한 국제조약상의 인권을 침해당한

1) 헌법재판소법, 종교자유법, 국회의원선거법, 대통령선거법 등의 법률을 말한다.

개인과 법인의 헌법소원심판

②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위헌 또는 위법적 결정 및 처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헌법소원심판

- 국회의원 권한의 존부확인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심판(헌법 제129조 제1항)
- 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자치단체 및 유럽의회 선거에 관한 소송(헌법 제129조 제2항)
- 일반 국민투표 및 대통령 해임에 대한 국민투표의 결과에 대한 소송(헌법 제129조 제3항)
- 정당과 정치결사의 해산결정 및 정치활동 금지결정의 헌법적 법률과 기타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(헌법 제129조 제4항)
- 대통령의 반역행위나 의도적인 헌법 침해 행위 시, 국회의 소추에 의한 대통령 탄핵심판(헌법 제129조 제5항)
- 국가비상사태 선포행위와 그에 수반한 부수적 행위의 헌법 및 헌법적 법률에의 합치 여부 심판(헌법 제129조 제6항)

5. 심리 및 결정

- 헌법재판소에는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재판부(Plenum)와 3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 지정재판부(Senate)가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8조 제1항, 제11조 제1항)
- 전원재판부는 과반수인 재판관 7인 이상의 참석으로 심리·결정하며, 재판관 전원의 과반수로 결정(헌법재판소법 제8조 제4항, 제5항)
- 지정재판부 재판관은 전원재판부에서 결정하며 임기는 12개월(헌법재판소법 제11조 제2항, 제4항)
- 헌법재판소장은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의 심리진행의 준비를 위하여 주심 재판관(Rapporteur)을 임명(헌법재판소법 제6조)
- 이미 결정한 지정재판부와 법리를 달리하는 지정재판부는 전원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판결(헌법재판소법 제13조 제1항)
- 법률 및 명령의 위헌 여부 심판(사후적 규범통제 중 ①, ②), 조약안의 위헌 여부 심판, 국민투표안건의 위헌 여부 심판, 헌법 해석권, 선거 및 국민투표에

관한 소송, 정당과 정치결사의 해산 및 정치활동 금지결정의 위헌 여부 심판, 대통령 탄핵심판, 국가비상사태 선포행위와 그에 수반한 부수적 행위의 위헌 여부 심판, 대통령 궐위확인 등은 전원재판부에서 결정(헌법 제131조 제1항, 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)

- 전원재판부의 관할이 아닌 사건은 지정재판부에서 다수결로 결정(헌법 제131조 제2항, 헌법재판소법 제10조 제1항)

6. 기타사항

- 헌법재판소는 재정적, 행정적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(Chancellery)과 심판업무의 실무적 보조를 위하여 법학을 전공하고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갖춘 연구관(Court advisor)을 두고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조~제3조)
- 재판관이 유죄확정판결을 받거나 형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경우, 재판관 직과 양립할 수 없는 행위로 헌법재판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, 1년 이상 재판절차에 불참한 경우, 국회의원 피선거권이 박탈된 경우에는 대통령은 재판관을 해임할 수 있음(헌법재판소법 제19조 제1항)

7. 연락처

- 주소 : Constitutional Court of the Slovak Republic
(Ustavný súd Slovenskej republiky)
Hlavná 110
045 65 Košice
slovakia
- 전화번호 : +451 55 720 7211
- 팩스번호 : +421 55 622 7629
- 홈페이지 : <http://www.concourt.sk>

※ 출처 : 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 홈페이지
슬로바키아 헌법
슬로바키아 헌법재판소법

(2021. 2. 작성)